

의안 번호	259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6. 8. 21.(금)
- 나. 발 의 자: 문승재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6. 8. 21.(금)
- 라. 심사일자: 2026. 9. 1.(화)

2. 제안설명 요지(문승재 의원)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현행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연가보상비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를 충족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3. 주요내용

- 가.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3조제4항)

4. 관계법령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 불명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의 위임 범위와 개정안의 내용을 대조한 결과 지급 상한일수(20일) 및 미지급·이월 기준(8시간 미만) 등은 상위 법령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대체로 부합함.
-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